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12

# 비상사태(이상상황) 대비 및 대응 지침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 / 22

#### 1. 목적

이 지침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또는 이상상황(이하 '비상사태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를 정하여 비상사태등의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통하여 임직원 및 관계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1 비상사태

중대재해, 화재·폭발사고, 유독가스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상황을 말한다.

#### 3.2 이상상황

갑작스러운 정전, 이상기후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황 등 공단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출장업무 포함)하는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말한다.

#### 3.3 화재·폭발사고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등의 물질이 점화원의 접촉으로 인해 불이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 3.4 중대재해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 / 22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

#### 3.5 산업재해

공단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3.6 안전사고

공단이 지배·관리하는 시설에서 공단 직원이 아닌 근로자 등 이해관자가 공단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것을 말한다.

#### 3.7 자연재난

감염병, 지진, 풍수해 등 자연적 환경에 의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 4.1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사장)

비상사태등 발생 시의 대비·대응 업무 최고 의사결정 및 경영상의 지원

#### 4.2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이사)

비상사태등 발생 시의 대비·대응 업무 총괄

#### 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사장)

소속기관 비상사태등 발생 시의 대비·대응 업무 총괄

#### 4.4 안전관리전담부서장(안전관리팀장)

비상사태등(중대재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염병에 한한다) 대비·대응 실무업무 총괄,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중대재해·일반재해 비상훈련계획 수립·시행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3 / 22

#### 4.5 재난관리 담담부서장(사고예방실장)

비상사태등(감염병을 제외한 자연재난에 한한다) 발생 시의 대비·대응 실무업무 총괄,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재난관리 비상훈련계획 수립·시행

#### 4.6 소방안전관리 담담부서장(운영지원실장, 기술원 운영지원팀장)

비상사태등(화재·폭발사고에 한한다) 발생 시의 대비·대응 실무업무 총괄, 공단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소방안전관리 비상훈련계획 수립·시행

### 4.7 관리감독자(팀장, 출장소장)

부서(팀)의 비상사태등 발생 시 대비·대응 실무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비상훈련 등에 참여

#### 4.8 직원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비상사태 등 대비 및 대응 지침 준수

#### 4.9 근로자

공단 임직원 아닌 도급사업 등의 근로자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비상사태등 대비 및 대응 지침 준수

### 5. 비상사태등 대비·대응 조치사항

#### 5.1 임직원의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대비·대응 조치사항

- 1)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대비·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 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 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나.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4 / 22

- 라.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재개한 경우 작업(업무)중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안전관리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마. 이사장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위험상황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는 「안전보건관리규정」제28조와 별표1과 같다.
- 2)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비·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발견자는 우선 긴급조치(119 연락 포함)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제5장, 「중대재해 조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 라. 비상시 응급대처요령은 별표2와 같다.
- 3)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사태 대비 대응훈련의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대응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과 근로자의 인명 및 재산손실 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 (2) 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시킨다.
    - (3) 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히 나타낸다.
    - (4) 주요 위험설비에 대한 내부 비상조치 계획뿐만 아니라 외부 비상조치 계획을 포함시킨다.
    - (5) 비상조치 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모든 근로자가 숙지,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 나.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비상조치 훈련계획은 교육 등을 통하여 사원들이 숙지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을 토대로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체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 훈련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5 / 22

- 다.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비상사태 대비 대응 훈련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책을 수립한 후 차기 년도 비상 조치 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라.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마.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본 지침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5.2 업무 또는 사업 수행 중의 이상상황 대비대응 조치사항

- 1) 임직원은 업무 또는 사업 수행 중에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하여 사전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 2)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등 소속직원의 교육·소통을 통하여 업무 또는 사업 수 행 중에는 예기치 않은 이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시로 알려야 한다.
- 3)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 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업무 또는 사업 수행 중에 발생가능한 이상상황 위험정보 공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업무 또는 사업 중에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상황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별표 1)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현장 업무 또는 사업 중에 임직원이 직접 정전 또는 전원차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LOTO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LOTO 운영절차서(별표3)에 따른다.

#### 5.3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대비·대응 조치사항

- 1)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공단이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 현 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 2) 도급사업 담당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한 작업중지 요청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3) 안전관리전담부서의 장은 작업중지 요청을 한 현장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업체 대표자 등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3) 도급사업 담당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현장 근로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작업을 중지시키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안전관리담당부서에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수급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안전보건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재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6 / 22

5) 이외의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야 한다.

### 5.4 자연재난 대비·대응 조치사항

- 1) 자연재난 대비·대응은 재난관리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별도의 계획 등에 따라 실시한다.
- 2)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은 자연재난 대비·대응 자료와 비상훈련결과 등을 안전관리 전담부서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 5.5 화재·폭발사고 대비·대응 조치사항

- 1) 화재·폭발사고 대비·대응은 소방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별도의 계획 등에 따라 실시한다.
- 2) 소방안전관리 담당부서장은 자연재난 대비·대응 자료와 비상훈련결과 등을 안전 관리전담부서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 6. 비상사태 대비·대응 물품 배포

- 1)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비상사태의 대비·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 2) 비상사태 대비·대응 물품 지원현황

구분	지원현황
공단본부	·고정식 응급구급함 : 1층 안내데스크 ·들 것 : 1층 안내데스크 ·이동식 응급키트 : 전 부서 ·화재대피 휴대용 방연마스크 ·LOTO 장비: 운영지원실
승강기안전기술원	·고정식 응급구급함 : 3층 운영지원팀 ·들 것 : 3층 운영지원팀 ·이동식 응급키트 : 전 부서 ·화재대피 휴대용 방연마스크 ·LOTO 장비: 운영지원팀
지역사무소	·이동식 응급키트 : 전 지역사무소 ·화재대피 휴대용 방연마스크 ·LOTO 장비: 산업안전검사업무 담당자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7 / 22

### 7. 관련 문서

- 1) 위험상황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별표1)
- 2) 비상시 응급대처요령(별표2)
- 3)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LOTO 운영 절차서(별표3)
- 4)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절차(별표4)
- 5) 현장업무 및 출장 중 이상상황 발생 대응 절차(별표5)
- 6) 중대재해 발생 시나리오(별표6~9)
- 7) 작업(업무)중지 관리대장
- 8) 비상사태 대응 훈련계획
- 9) 비상사태 훈련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8 / 22

<별표1> 위험상황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서

〈1〉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안전보건관리규정」제28조

〈2〉 적용대상: 공단 직원

〈3〉작업중지 절차

구분	절차내용
<b>●</b> 위험상황 인지	•검사, 인증 등 작업(업무)수행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을 알게 됨
②작업(업무)중지 및 대피	•즉시 작업(업무)수행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❸관리감독자 보고	•작업(업무)를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은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업무)중지 및 위험상황을 보고 ※ 관리감독자: 본부 및 기술원 실·팀장, 지역사무소 팀장
<b>4</b> 안전보건조치	•작업(업무)중지 및 위험상황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지도하고, 직원은 안전보건조치 이후에 작업(업무) 재개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안 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 결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본부 및 기술원 처장, 지역사무소장 ※ 필요한 경우 본부 안전관리팀장에게 협조 요청
⑤작업(업무)중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전사 공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업무) 재개를 완료한 경우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업무)중지 관리대장」을 작성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업무)중지 관련 내용을 본부 안전관리팀에 통보하고 본부 안전관리팀은 전사 공유

〈4〉참고사항: 작업(업무)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9 / 22

<별표2> 비상시 응급대처요령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0 / 22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1 / 22

<별표3>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LOTO 운영 절차서

###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LOTO 운영 절차서

(Lock Out, Tag Out)

〈1〉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보건관리규정」제23조

〈2〉 적용대상: 정전 및 전원차단이 필요한 작업(업무 등)

<3> LOTO 절차

구분	절차내용
❶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②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3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기계·설비의 주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b>4</b> LOTO 설치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b>5</b> 작업실시	•기계·설비·정지 확인 후 작업 실시
6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b>7</b>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3기계 설비 재가동	•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2 / 22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3 / 22

<별표4>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 운영 절차서

###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 운영 절차서

### <1> 관련근거

-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7조
- o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 운영계획(안전관리팀-1412호, '20.8.13)

### <2> 적용대상

- ㅇ 공단과 계약한 도급사업(발주공사 포함)의 현장 근로자(공단 직원 제외)
- <3> 작업중지 요청 요건(공단이 지배·관리하는 사업·시설에서)
  - ①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②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③ 기계ㆍ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 ④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 ⑤ 강풍,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 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⑦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4> 운영절차(신고: 안전도움전화 055-751-0764, 0911, 0918)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팀		관련부서		수급업체		관련부서
记6 七王八		1414 b		22771		H H^		및 근로자
자연 조기	$\Rightarrow$	신고 접수 및	$\stackrel{\triangle}{\Box}$	현장조사 및	$\Rightarrow$	개선조치 및	$\Rightarrow$	조치상태
작업중지 기기		관련부서		수급업체에		관련부서에		확인 및
요청 신고		통보		개선 요구		결과 통보		작업재개

※ 공단 발주공사현장은 담당부서에서 자체 운영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4 / 22

# <u>작업중지</u> 요청제 안내문

"0上社 王光 社화圣 社화해 주세요.

055-751-0764 (055-751-0911) (055-751-0918)



건의/신고 방법

01

근로자의 권역과 아저작 않을 보장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움 전화 5대 항목 발견

02

도움 전화 055-751-0764 (0977/0918)로 전화 03

근무하는 현장을 말하고 5대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

\*개인 인적사항(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01

### 관리자로부터 언어폭행이나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

#욕설 #구타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작업 강행 #위험한 곳에 방치 12

### 해야 할 일에 대한 <mark>교육/안내/</mark> 설명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법정교육(기초안전, 정기, 특별)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 방법 #일과 상관없는 내용(종교, 정치)

03

# 작업 여건에 <mark>적합한 보호구</mark>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호구 못받음 #지급 보호구 불령 #보호구 불충분 #비위생 보호구 지급 04

#### 위험성평가와 작업 허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

#전달 받은적 없음 #허가서와 현장상태 다름 #작업승인없이 작업지시 #작업허가서 미비치 O.F

### 적절한 안전시설물 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물 설치 부족 #안전 시설물 미설치 #안전시설물이 낡아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음

\*기타 안전관련 불안전 상태/시설/업무강요로 인해 위험을 느낀 경우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5 / 22

<별표5> 위험상황에 따른 직원 작업중지 절차

### 현장업무 및 출장 중 이상상황 발생 대응 절차

- □ 현장업무 · 출장 중 재난 등으로 인한 이상상황 정의 현장업무 또는 출장 중 재난, 기상악화 등의 상황 발생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현장업무 진행이 곤란한 상황
- □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 (원칙) ① 우선 작업중지 후 안전한 장소 대피 또는 응급조치 시행
    - ② 건물관리인 등의 요청사항 및 직원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 중지 절차 준용
  - 이상상황별 대응 절차

이상상황	대응 절차
폭우 · 폭설 (넘어짐, 감전)	① 폭우, 폭설 발생 → ② 해당 현장의 상황(침수, 결빙 등) 확인 → ③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 → ④ 관리자 보고 후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절차 준용
폭염 · 한파 (온열 · 한랭질환)	① 질환 우려 직원 발생 → ② 즉시 작업중지 후 해당 직원 상태 확인(필요시 119 신고) → ③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시행 → ④ 관리자 보고 후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절차 준용
지진 · 화재 (떨어짐, 물체에 맞음, 무너짐, 질식)	① 지진 또는 화재 발생 → ② 즉시 작업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필요시 119 신고) → ③ 건물관리인 등의 요청사항 준수 → ④ 관리자 보고 후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절차 준용
강 풍 (떨어짐, 물체에 맞음, 무너짐)	(업무前) ① 강풍 발생 → ② 관리자 보고 후 작업 수행 여부 조치 이행 → ③ 작업 수행 시 무너짐 위험 등 사전 점검 실시 (업무中) ① 강풍 발생 → ② 즉시 작업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③ 관리자 보고 후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절차 준용 ※ 실외 또는 바람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한함
정전 ( <u>감전</u> )	<ul> <li>① 정전 발생 → ② 즉시 작업증지 후 건물관리인 등을 통해 정전상황 등 확인 → ③ 건물관리인 등의 요청사항 준수 →</li> <li>④ 관리자 보고 후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증지 절차 준용</li> </ul>
감염병	① 임상증상 직원 발생 → ② 관리자 보고 → ③ 정부지침 준수 및 실시 중인 검사업무 일정 등 조정(필요시) → ④ 확진 직원 발생 시 본부 안전관리전담부서 통보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6 / 22

### <별표6> 추락사고 발생 시나리오(검사자 중대재해)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시나리오			
❶승강기 검사 중 검사자 추락사고 발생					
<b>②</b> 2차 사고 방지 조치	목격자	·승강기 가동 등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원차단 등 조치			
❸의식확인 및 119 신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 ·의식이 없는 경우 직접 응급처치 실시(기도확보, 심폐소생술)			
<b>④</b> 부서장 등에 보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부서장, 직속상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b>⑤</b> 초기 사고상황 보고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사고발생을 알게 된 부서장 등은 지체없이 초기 사고상황을 파악, 안전관리주관부서에 보고 - 초기 상황은 산업재해상황보고서(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유선 등 우선 보고			
⑥사고현황 보고· 전파 및 중대사고 통지	전담부서	·보고받은 초기 사고상황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내부보고 및 전파 - 임원진 보고 및 노동조합·직원에게 전파 ·중대재해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지체없이 보고 ·승강기법에 따른 중대한 사고는 사고조사담당부서에 통지(사망, 1주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			
<b>⊘</b> 사고조사	담당부서	·통지를 받은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 등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필요시 사고조사에 안전관리주관부서 참여) ·사고조사 결과 등은 안전관리주관부서로 통보			
<b>③</b> 산업재해조사표 등 제출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중대재해 등의 조치가 일정수준 완료된 경우 산업재해현황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2호)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안전관리주관부서에 공문 제출(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담당부서로 송부)			
안재보험 등 후속조치	산업재해 담당부서 (노무복지실)	·산업재해조사표를 송부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함께 산재보험 보상 및 배상 등 후속조치 지원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사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지역사무소 전파 및 안전교육 등 실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7 / 22

### <별표7> 감전사고 발생 시나리오(검사자 중대재해)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시나리오			
❶위험기계기구 산업안전 검사 중 충전부 접촉으로 검사자 감전사고 발생					
<b>②</b> 2차 사고 방지 조치	목격자	·목격자는 사고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말고, 전원을 우선 차단			
❸의식확인 및 119 신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 ·의식이 없는 경우 직접 응급처치 실시(기도확보, 심폐소생술)			
<b>4</b> 부서장 등에 보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부서장, 직속상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b>⑤</b> 초기 사고상황 보고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사고발생을 알게 된 부서장 등은 지체없이 초기 사고상황을 파악, 안전관리주관부서에 보고 - 초기 상황은 산업재해상황보고서(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유선 등 우선 보고			
⑥사고현황 보고·전파 및 중대사고 통지	전담부서	·보고받은 초기 사고상황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내부보고 및 전파 - 임원진 보고 및 노동조합·직원에게 전파 ·중대재해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지체없이 보고			
<b>⊘</b> 사고조사	전담부서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구성 하여 조사 ·사고조사 결과 등은 해당업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b>③</b> 산업재해조사표 등 제출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중대재해 등의 조치가 일정수준 완료된 경우 산업재해현황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2호)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안전관리주관부서에 공문 제출(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담당부서로 송부)			
안재보험 등 후속조치	산업재해 담당부서 (노무복지실)	·산업재해조사표를 송부받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함께 산재보험 보상 및 배상 등 후속조치 지원			
ႍ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사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지역사무소 전파 및 안전교육 등 실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8 / 22		

### <별표8> 화재사고 발생 시나리오(검사자 중대재해)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시나리오		
◆승강기 검사 중 화재사고 발생				
<b>②</b> 2차 사고 방지 조치	목격자	·초기 소화기로 진화 및 화재경보기 작동, 상황 전파		
❸의식확인 및 119 신고	목격자	·피난계단으로 대피 및 동시에 119에 신고 ·환자 발생 시 직접 응급처치 실시(기도확보, 심폐소생술)		
<b>4</b> 부서장 등에 보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부서장, 직속상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b>⑤</b> 초기 사고상황 보고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사고발생을 알게 된 부서장 등은 지체없이 초기 사고상황을 파악, 안전관리주관부서에 보고 - 초기 상황은 산업재해상황보고서(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유선 등 우선 보고		
[ <b>③</b> 사고현황 보고·선파 및 □  ̄ ̄ ̄ · 전담부서 · 조대사고 통지		·보고받은 초기 사고상황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내부보고 및 전파 - 임원진 보고 및 노동조합·직원에게 전파 ·중대재해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지체없이 보고		
안전관리 <b>②</b> 사고조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구성 하여 조사 ·사고조사 결과 등은 해당업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b>③</b> 산업재해조사표 등 제출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중대재해 등의 조치가 일정수준 완료된 경우 산업재해현황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2호)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안전관리주관부서에 공문 제출(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담당부서로 송부)		
안재보험 등 후속조치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송부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 남당부서 (노무복지실) 발생 보고와 함께 산재보험 보상 및 배상 등			
❶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사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지역사무소 전파 및 안전교육 등 실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19 / 22

### <별표9> 끼임사고 발생 시나리오(검사자 중대재해)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시나리오			
<b>①</b> 승강기 검사 중 화재사고 발생					
<b>②</b> 2차 사고 방지 조치	목격자	·승강기 가동 등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원차단 등 조치			
❸의식확인 및 119 신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 ·의식이 없는 경우 직접 응급처치 실시(기도확보, 심폐소생술)			
<b>4</b> 부서장 등에 보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부서장, 직속상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b>⑤</b> 초기 사고상황 보고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사고발생을 알게 된 부서장 등은 지체없이 초기 사고상황을 파악, 안전관리주관부서에 보고 - 초기 상황은 산업재해상황보고서(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유선 등 우선 보고			
⑥사고현왕 보고·선파 및 전담부서 중대사고 통지		·보고받은 초기 사고상황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내부보고 및 전파 - 임원진 보고 및 노동조합·직원에게 전파 ·중대재해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지체없이 보고			
안전관리 <b>②</b> 사고조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구성 하여 조사 ·사고조사 결과 등은 해당업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b>③</b> 산업재해조사표 등 제출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중대재해 등의 조치가 일정수준 완료된 경우 산업재해현황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2호)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안전관리주관부서에 공문 제출(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담당부서로 송부)			
│ <b>②</b> 산재보험 등 후속조치 │ 남당부서 │		·산업재해조사표를 송부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함께 산재보험 보상 및 배상 등 후속조치 지원			
❶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사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지역사무소 전파 및 안전교육 등 실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0 / 22	

### <별표10> 질식사고 발생 시나리오(외부 작업자 안전사고)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시나리오		
❶청사 지하1층 저수조 청소작업 중 산소결핍에 따른 외부 청소작업자 질식사고 발생				
❷2차 사고 방지 조치 및 구조 목격자		목격자는 절대 저수조에 바로 들어가서 작업자를 구조하지 말고 비치된 송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구출을 시도 혼자 구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불가능힌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 신고		
❸의식확인 및 119 신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119 및 관리감독자에 신고 ·의식이 없는 경우 직접 응급처치 실시(기도확보, 심폐소생술)		
<b>④</b> 부서장 등에 보고	목격자	·목격자는 즉시 부서장, 직속상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b>⑤</b> 초기 사고상황 보고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사고발생을 알게 된 부서장 등은 지체없이 초기 사고상황을 파악, 안전관리주관부서에 보고 - 초기 상황은 산업재해상황보고서(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1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유선 등 우선 보고		
⑥사고현황 보고·전파 및 중대사고 통지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보고받은 초기 사고상황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내부보고 및 통보 - 내부보고 : 임원진 보고 - 전파 : 외부 청소작업자 사업주에게 통보 ·중대재해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지체없이 보고		
<b>⑦</b> 사고조사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 하여 조사 ·사고조사 결과 등은 해당업무 관리감독자 및 외부 청소작업자 사업주에게 통보		
<b>③</b> 산업재해조사표 등 제출	부서장 (지사장), 직속상관	·중대재해 등의 조치가 일정수준 완료된 경우 산업재해현황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별지제2호)를 작성, 안전관리주관부서에 공문 제출		
❸외부 청소작업자 사고수습 지원	영업배상 담당부서 (운영지원실)	·외부 청소작업자의 사고수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여 각종 비용 등 적극 지원		
❶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안전관리팀)	·사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관련 부서 전파 및 안전교육 등 실시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1 / 22	

### <별표11> 출장업무 중 정전 발생 시나리오(이상상황 대비)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시나리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중 사업장 정전 발생					
❷즉시 검사업무 중지 및 대피	검사자	·사업장 정전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검사업무를 중지 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❸관리감독자 보고 및 정전 원인 등 확인	검사자	·정전으로 검사업무를 중지하고 대피한 사실을 관리감독자(팀장에게 보고한다. 사업장 관계자 등을 통해 정전 원인 등을 확인한다.			
◆검사업무 재개 가능 여부 확인	검사자	·정전 원인 확인을 통해 검사업무 재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업무 재개 여부를 관리감독자(팀장)에게 보고한다.			
⑤(검사업무 재개 시) 안전보건조치 시행	관리감독자, 검사자	·검사업무 재개 가능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팀장)은 검사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지시한다. ·검사자는 지시받은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고 검사업무를 재개한다. ·정전 상태로 검사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시기동 방지 장치(LOTO)를 설치하고 실시한다.			
⑥(검사업무 재개 불가 시) 검사업무 종료 조치	관리감독자, 검사자	·검사업무 재개 불가를 보고받은 관리감독자(팀장)은 검사자에게 즉시 검사업무를 종료할 것을 지시한다. ·검사자는 검사업무 재개가 불가함을 사업장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차기 검사 시에 안전보건조치 상황을 점검할 것임을 안내한다.			
<ul><li>♂검사업무 중지 사실의</li><li>본부 안전관리팀 통보</li></ul>	관리감독자	·검사업무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업무 중지 사실을 본부 안전 관리팀에게 통보한다.			
<b>③</b> 후속조치 시행	안전관리팀, 부서장	·검사업무 중에 업무 중지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관리팀은 세부 현황을 파악한다.(필요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한다.) ·안전관리팀은 업무 중시 사실을 전 부서에 즉시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자료로 개발하여 전파한다. ·부서장은 업무 중시 사실을 소속직원에게 전파하고, 향후 동일 이상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도록 조치한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2 / 22	

## 작업(업무)중지 관리대장

### 사업장명(부서명):

번호	일시	작업중지 보고자	위험 장소 및 내용	조치일시 및 내용	확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3 / 22	

		결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등 대응 훈련계획		재			
훈 련 목 적					
훈 련 일 시					
훈련대상부서					
ᇂᅯᄮᇸ					
훈 련 상 황					
훈 련 장 소					
평 가 팀					
			년	월 일	
첨부 : 비상사태	등 대응훈련 시나리오				



문서번호	자율 지사-KoELSA-12			
제·개정일자	2023.00.00.			
개정차수	0			
페이지	24 / 22			

비상사태등 훈련결과 보고서		결	작 성	검 토	승 인
		_     재			
		/\l			
비상사태등 종류					
훈 련 일 시					
장 소					
훈 련 구 분	참석인원				
상 황 개 요					
훈련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